##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06 발의연월일: 2021. 6. 9.

발 의 자 : 아수진비 · 강민정 · 김성환

김수흥 · 노웅래 · 류호정

배진교 · 송옥주 · 송재호

안호영 · 양이원영 · 윤미향

윤준병 • 이규민 • 임종성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 등으로 하천수위와 유량의 변동성이 크고, 녹조·유류(油類)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 하천수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의 기준수위를 조절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취·양수장의 취수구 위치는 대부분 관리수위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 하천수위가 관리수위보다 낮아지는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하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구 위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취수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취·양수장의 취수구 등 취수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천수위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하천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취수시설을 설치·개선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0조제4항 신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시설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제50조제5항 신설).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대상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관리하는 시설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0조의2제5항 중 "제50조제5항 및 제9항"을 "제50조제7항 및 제11항"으로, "제50조제8항"을 "제50조제10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7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 ·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	
	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u>&lt;신 설&gt;</u>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u>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u>	
	대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	
	<u>하는 시설</u>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u>관이 설치·관리하는 시설</u>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u>④</u> ~ <u>⑨</u> (생 략)	<u>⑥</u> ~ <u>⑪</u> (현행 제4항부터 제9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
신고 등) ① ~	④ (생	략)

-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는 제50조제5항 및 제9항, 기득 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50조제8항을 준용한다.
-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 (생략)
  - ②제37조 및 제50조제5항에 따라 장수하는 점용료·사용료 등은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 항까지와 같음)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5) ------- 제50조제7항 및 제11항--------- 제50조제10항-----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50조제7항-----